

서울약령시전통한의학문화보존특별지구지정에관한청원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6
------	---

2002년 12월 일
문화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청 원 인 : 박상중(강남구 논현동 257-17) 외 830명
- 나. 소개의원 : 박주용 의원
- 다. 접수일자 : 2002. 11. 12
- 라. 회부일자 : 2002. 11. 12
- 마. 상정일자 : 2002. 12. 26(제138회 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상정·의결

2. 청원요지

- 서울약령시는 조선초기 왕명에 의해 가난한 병자의 치료를 담당하던 구휼(救恤)기관인 보제원(普濟院)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전통한의학의 발전과 제세구민을 위한 선조들의 위업이 서려 있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임.
- 이에 서울약령시를 도시계획법 제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한의학 문화보존 특별지구로 지정하고
- 세계인에게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한의약과 관련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 시킬 수 있도록 서울약령시지역에 대한 관리·육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임.

3. 취지설명 요지(박주용 의원)

- 서울약령시는 동대문구 제기동, 용두동 일대의 943필지 71,200여 평의 면적에 한의원·약국, 한약방, 한약수출입, 한약도·소매 등 1,000여 업체가 한약의 유통·진료, 투약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지역으로 전국 물동량의 70% 이상을 유통시키고 있는 전통한약시장 지역이며,
- 조선조 초기 왕명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병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던 구휼기관인 보제원(補劑院)이 있었던 유서 깊은 곳으로 전통한의학 발전과 제세구민을 위한 선조들의 위업이 서려 있던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으로, 세계 제일의 전통한의학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리·육성 지원대책을 강구할 대상지역임.
- 특히 강남·북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강북지역의 개발요구가 점증되고 있는 시점에 개발과 보존의 균형 유지차원에서 서울약령시 지역을 전통한의학 문화보존 특별지구로 지정하여 세계 제일의 전통한의학 시장으로 성장하면서 전통문화를 온전하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함은 시의 적절한 지역 발전정책이라고 사료됨.
- 본 청원과 관련하여, 문화보존지구로 지정할 경우 건축제한을 받는 등 지역 상권의 위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잘못된 견해도 있는 것 같으나 이는 유형적인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인 한의학이라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것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됨.
- 한편, 필요에 의해서 건축제한 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정할 사항이므로, 조례에 지역실정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으므로 우려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사료됨.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전통 깊고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서울약령시를 세계제일

의 전통한의약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 및 도시계획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음.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지구」는 문화예술진흥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거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골동품점 등 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문화예술행사·축제 등 문화예술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정하는 것으로 문화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세감면이나 용자금 지원해줄 수 있고 지구내에 비문화업종의 진입이나 영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전통문화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혜택이 있음.
- 서울약령시가 문화예술진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지구의 범위에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로서, 동법상 문화지구의 구성요건을 문화시설이나 문화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바, 서울약령시에 소재하는 업종은 대부분 한의약 관련 업소가 주종을 이루며 오히려 문화시설이나 문화유적은 1개소(보제원터)에 불과하여 동지역은 문화지구로써의 지정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문화예술행사나 축제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역시 문화지구로 지정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동 지역에서 서울약령시 축제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 가능성이 있다고 볼 것이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지구 지정시에는 건축제한이나 영업제한 등 재산권 침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오히려 청원인들의 주장과는 상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청원인들의 요구사항과는 좀 다르지만, 서울약령시축제를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토록 건의하여 연례적인 예산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축제를 활성화하고, 한의약 전문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상점가」 지구 및 「전문상가 단지」로 지정하여 육성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의견서 채택 본회의 부의하기로 함.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11. 의견서 : 첨부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6		접수년월일	2002.11. 8
청원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57-17		
	성명	박상중 외 830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박주용 의원 (한나라당, 동대문 제3선거구, 운영위원회)			
건명	서울약령시전통한의약문화보존특별지구지정에관한청원			
소관위원회	문화교육위원회			